

수자원분야 규제개혁 내용

건설교통부는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홍수를 억제하고, 아울러 하천제방을 축조하여 홍수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63%인 하천개수율을 2011년까지 100% 달성할 계획이며 하천 제방축조나 댐 건설과 병행해서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하고, 보조수자원으로서 지하수의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기 위해 하천관리와 지하수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는바, 하천법을 개정하여 하천인근지역 토지소유자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하천 연안구역제도를 폐지하고 하천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하천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하천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고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애로를 겪고 있는 하천관련 사업자의 경영개선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하수법령을 개정하여 지하수 개발·이용과 관련한 각종 권한을 시·군·구에 위임하고 착공신고제도의 폐지 등 재반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천법과 지하수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집부>

■ 하천관련규제 대폭 완화

1. 하천연안구역제도 폐지

하천부속물의 손괴, 하천에의 토사유입이나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인근구역(하천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을 하천연안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신·개축, 축목의 식재·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행위제한을 가하여 왔으나 하천연안구역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하천인근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신에 하천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국가가 해당토지를 매입하여 지정하천으로 관리할 예정.

2. 하천관련 권리·의무의 양도·양수허가제도 폐지

하천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양도·양수후 그 사실을 신고만 하도록 하여 하천관련 권리·의무

의 양도·양수절차를 간소화함. <하천관련 권리·의무-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권, 하천산출물의 채취권>

3. 하천구역내 행위제한 완화

하천권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작물의 제거, 나무의 벌채 등의 행위는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함.

4. 각종 부담금 제도 폐지

하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인자 부담금, 하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유지보수비용, 하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자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함

5. 하천점용허가 제한제도 폐지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하천산출물을 채취한 자와 하천점용허가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자는

일정기간(2~3년) 하천점용허가를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하천산출물 불법 채취자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자라도 하천관리청이 판단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하천연안구역제도

하천부속물의 손괴, 하천에의 토사의 유입이나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으로부터 500m 이내 범위안에서 관리청이 하천관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행위제한을 다음과 같다.

- 행위제한

- ①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제거
 - 죽목의 재식 또는 벌채
 - 토지의 굴착, 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 ② 토지소유자의 부담
 - 연안구역내에 있는 토지, 가옥 기타공작물의 소유자는 공작물등의 손괴, 토사의 유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하천에 피해를 미칠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관리청은 필요시 공작물 등의 소유자에게 위험방지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음.

〈표-1〉 지정 현황

구분	계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하천수	개소	하천수	개소	하천수	개소	하천수	개소
계	7	31	4	22	2	8	1	1
강원	2	2	2	2	-	-	-	-
충남	1	19	1	19	-	-	-	-
전북	3	9	-	-	2	8	1	1
경남	1	1	1	1	-	-	-	-

■ 국민편의 도모를 위한 지하수 규제외 개선

1. 지하수 개발·이용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권의 지방이양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및 신고, 원상복귀명령

등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시·도지사의 각종 권한을 시·군·구에 이양함으로써 시장·군수·구청장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각 지역실정에 맞게 지하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2.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공사의 착공 신고제 폐지

지금까지는 지하수 시설공사를 할 경우에 착공 신고를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또 준공신고를 하도록 해 필요 이상으로 규제하였으나 착공신고제를 폐지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 전국적으로 약 787천개의 지하수시설(생활용 51%, 농업용 39%)이 있으며 연간 3~4만개 정도의 시설이 개발되고 있음.

3. 지하수 시설의 표준설계도 추가

소규모의 신고시설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국가가 제시하는 표준설계도를 4종에서 7종으로 확대하여 개별적으로 설계도를 작성시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함

4.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완화 등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체의 등록기준중 기술인력을 기술자격등급에 관계없이 2명만 확보(현행은 기사1, 기능사 1)하면 되도록 하고, 개인 사업자일 경우 자산평가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완화하였으며, 휴·폐업신고제 등을 폐지하여 영업의 자율성을 확대하였고 아울러,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의 지정제를 등록제로 완화하여 조사업무에 대한 진입을 용이하게 되었다.

※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체('98. 10말 현재) : 864개 업체(서울 62, 경기 152, 경북 127, 충남 114, 경남 111 등)

※ 지하수 영향 조사기관('98. 10월말 현재) : 152개 업체(서울 31, 경기 29, 경북 22 등)

※ 전국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지하수 조사연보, 1997)

실적 - II

〈표-2〉 연도별 지하수 개발 현황

(단위 : 백만입방미터/년)

개발년도	연도별 개발량		개발년도	연도별 개발량	
	개소수	이용량		개소수	이용량
1990년 이전	565,244	1,528.3	1994	565,244	1,528.3
1991	31,774	115.2	1995	31,774	115.2
1992	39,698	141.5	1996	39,698	141.5
1993	29,834	137.4	총계	29,834	137.4

〈표-3〉 용도별 현황('96년)

(단위 : 백만입방미터/년, %)

총 계		생활 용		공 업 용		농 업 용		기 타	
개소	이용량	개소	이용량	개소	이용량	개소	이용량	개소	이용량
786,921	2,864	478,393	1,468	11,269	214	292,869	1,115	4,390	67
	(100)		(51)		(8)		(39)		(2)

〈표-4〉 지역별 이용 현황('96)

(단위 : 억입방미터/년, 개소, %)

구 분	전 국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경 기
관정수	786.9	14.5	7.9	3.9	5.6	8.0	11.0	75.9
이용량	28.6	0.47	0.66	0.42	0.17	0.38	0.35	3.15
비 율	100	1.6	2.3	1.5	1	1.3	1.2	11

구 분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관정수	36.9	77.5	121.8	143.3	166.9	65.5	43.9	3.5
이용량	1.01	2.87	3.48	3.65	4.33	3.0	2.98	1.65
비 율	3.5	10	12.1	12.8	15.1	10.5	10.4	5.7